

# '24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안내

## 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
구분	육아휴직·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	대체인력 지원금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</li> </ul>
지원내용	<p><b>(육아휴직 지원금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</li> <li>· 만 12개월 내 자녀 대상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</li> </ul> <p><b>(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</li> <li>· 육아기 단축을 세 번째 허용한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급</li> <li>·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</li> <li>·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</li> </ul> </li> <li>·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 육아기 단축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
지원요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</li> <li>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</li> <li>③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시 지급,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시 지급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2개월 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</li> <li>②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</li> <li>③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,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</li> <li>④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제한기간 적용 (위반 시 환수조치)</li> </ol>

## □ 일·생활 균형 지원제도

구분	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		워라밸일자리 장려금	
	유연근무 장려금	일·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	소정근로시간 단축지원	실근로시간 단축지원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우선지원대상기업*, 중견기업</li> <li>* 제조업: 500인 이하, 건설업·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: 300인 이하, 도소매·숙박 등 200인 이하, 기타 100인 이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</li> <li>· 근무혁신 우수기업*</li> <li>* 일·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선지원 중견기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족돌봄·본인건강·은퇴준비·학업 등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,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</li> </ul>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(최대 1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택원격근무 최대 <b>360만원</b></li> <li>- 시차출퇴근 최대 <b>240만원</b></li> <li>- 선택근무 최대 <b>240만원</b></li> </ul> </li> <li>*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·원격·선택근무는 상향지원(+10만원)</li> <li>·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%(최대 70명 한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재택·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</b> 근태관리 시스템·정보보안 시스템* 투자비 지원 (사업주 투자 비용의 50~80%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VPN, 원격접속,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</li> </ul> </li> <li>· <b>유연근무(재택·원격·시차·선택)인프라</b> 근태관리 시스템* 투자비 지원*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그룹웨어, 출·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(노트북, 건물 임차비용 등 제외)</li> <li>** 사업주 투자 비용의 70%, 연 250만원 기준(3년치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려금: 월 최대 30만원</li> <li>- 임금감소액보전금: 월 최대 20만원</li> </ul> </li> <li>· <b>지원인원</b>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%</li> <li>· <b>지원기간</b>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, 3개월 단위 신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장려금</b> 1인당 월 30만원</li> <li>· <b>지원인원</b> 지원대상 근로자의 30% (최대 100명)</li> <li>· <b>지원기간</b>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, 3개월 단위 신청</li> </ul>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공통</b>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h~40h 이하 ②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·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 전자적·기계적 방식으로 출·퇴근 시각을 기록·관리</li> <li>· <b>선택근무제</b> 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②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 근로자 대표와 합의</li> <li>· <b>시차출퇴근</b>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시만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승인</li> <li>② 참여신청일 이후 철치·취득하는 프로그램·시설·장비 지원</li> <li>③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*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최대 3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단축제도 도입</li> <li>②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~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</li> <li>③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</li> <li>④ 근로시간 단축중 연장근로 제한(월 10시간)</li> <li>⑤ 최초 1개월(임신사유시 2주)이상 단축 제도 활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<b>계획수립</b> 실근로시간* 단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+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</li> </ul> </li> <li>② <b>실근로시간 감소</b>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<b>2시간 이상</b> 감소한 경우</li> <li>③ <b>근태관리</b> 전자기계 방식으로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 관리</li> </ul>

## □ 고용안정장려금 공통사항

### ○ 사업소개

- **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**은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,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- **일·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**은 소속 근로자가 일·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·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,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- **워라밸일자리 장려금**은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장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,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,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기업전반의 실근로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
○ (온라인 신청경로) 고용24([www.work24.go.kr](http://www.work24.go.kr)) 접속 → 기업회원 로그인 → 기업지원금 →

출산·육아/유연근무 검색

※ (문의) 국번없이 1350, 경주고용센터 담당자(054-778-2516,2532)